

초소형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(제45조제2호 관련)

1. 작동조건

- 가. 비상점멸표시등은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점멸할 수 있도록 독립된 조작 장치에 의해 작동될 것
- 나. 비상점멸표시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전기적 시스템 또는 원동기 주작동스위치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작동되는 구조일 것
- 다. 비상점멸표시등은 별표 45 제1호바목에 적합하게 작동할 것

2. 표시장치

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멸 적색 표시장치를 설치하거나 좌·우측 동시에 점멸되는 방향지시등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